|  |  |  |
| --- | --- | --- |
| **보험회사 중개업무 위법행위**  **처벌방법**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령  2009년 제4호  　　《보험회사 중개업무 위법행위 처벌방법》을 2009년 9월 18일의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주석 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석 吳定富  　　　　　　　　　　　　　　　　　　　　　　　　　　　2009년 9월 25일  **제1조** 보험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험회사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예방, 처벌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보험사정기구를 통하여 판매, 배상 등 활동에 종사할 시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라 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보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과 국무원이 부여한 권한에 근거하여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보감회의 파출기구는 중국보감회가 부여한 권리범위 내에서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3조** 보험회사는 합법적이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중개업무 관리제도를 제정함으로써 그 경영행위의 의법 적격과 업무재무데이터의 진실 및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보험회사의 업무, 재무관리정보시스템은 중개업무의 업무상황과 재무정보를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벽하게 기록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건별로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를 통하여 체결된 보험증권의 보험료와 커미션 금액을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  **제5조** 보험회사는 중개업무에 대한 심사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중개업무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중개업무 활동 중의 위법 또는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6조** 보험회사는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인에 대한 법률 법규와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교육기록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7조** 보험회사는 전문부서를 설립하여 보험대리업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게 하고, 대리업무의 적격경영 보관서류를 건립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대리업무의 정기 심사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대리업무의 적격경영 보관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제8조** 보험회사는 위탁계약서에,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인의 보험 위법행위를 시정하게 하며 보험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대리권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약정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에게 보험 위법행위를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보험대리인이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그 대리권을 종결시켜야 한다.  **제9조**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인의 아래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 후 10일 근무일 내에 중국보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엄중히 피해를 주는 경우  (2) 보험업무를 통하여 자금을 불법 모집하거나 다단계 판매 혹은 돈세탁 등 불법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3) 중국보감회의 규정에 따라 보고가 필요한 기타 행위  **제10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장부 외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험중개기구 및 업무직원에게 위탁계약서의 약정을 벗어난 기타 이익을 비밀리에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를 속이도록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및 보험사정기구를 사주하거나 유도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및 보험사정기구를 이용하여 미수 보험료를 허위 나열하거나 세무영수증을 허위 발행하거나 보험증권을 허위 수정, 말소하거나 보험해약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중개업무를 이용하여 기타 기구 혹은 개인을 위한 부당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를 통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서의 약정을 벗어난 보험료 리베이트 혹은 기타 이익을 주는 승낙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와 결탁하여 보험료를 유용, 차압 또는 점유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보험사정기구와 결탁하여 보험계약서을 허위 조작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혹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 정도를 과장하여 허위배상을 함으로써 보험료를 사취하거나 기타 부당 이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합법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구 혹은 개인에게 보험판매 활동을 위탁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보험회사 및 그 업무직원은 보험활동 중에 중개업무를 날조하거나 개인보험대리인의 자료를 조작하거나 중개업무비용을 허위 나열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을 통하여 허위 중개업무보고서, 재무제표, 문건, 자료를 조작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 제6조부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로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당무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 제10조부터 제17조에서 규정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신규 업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취소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당무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중국보감회은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그 임직자격 혹은 종업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책임인원이 일정한 기간, 나아가서는 종신토록 보험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제21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 제18조에서 규정한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경위가 엄중한 경우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신규 업무를 접수하지 못하도록 명령하거나 업무허가증을 취소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당무자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중국보감회는 경고를 주고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그 임직자격 혹은 종업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책임인원이 일정한 기간 혹은 종신토록 보험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  **제22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 중 보험대리인, 보험브로커, 보험사정기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건을 병합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 중에 불법 자금모집, 다단계판매, 돈세탁, 국가 조세관리규정 위반 등의 기타 부서가 조사처리해야 하는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관부서에 이송해야 한다.  **제24조**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 중에 국유 보험회사의 업무직원이 횡령, 수뢰, 공금유용 등의 규율위반 또는 범죄 단서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감찰기관 혹은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중국보감회가 보험회사의 중개업무 위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 비국유 보험회사 및 업무직원의 직무점유죄, 비국가 공직자 수뢰죄, 비국가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공죄, 탈세죄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保险公司中介业务违法行为**  **处罚办法**  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令  2009年第4号  　　《保险公司中介业务违法行为处罚办法》已经2009年9月18日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主席办公会审议通过，现予公布，自2009年10月1日起施行。  　　　　　　　　　　　　　　　　　　　　　　　　　　　　　　 主席 吴定富　　　　　　　　　　　　　　　　　　　　　　二○○九年九月二十五日  **第一条** 为了维护保险市场秩序，预防和惩处保险公司中介业务违法行为，促进保险业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等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保险公司通过保险代理人、保险经纪人、保险公估机构进行销售、理赔等活动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以下简称“中国保监会”）的规定。  　　中国保监会根据《中华人民共和国保险法》和国务院授权履行监管职责。中国保监会派出机构，在中国保监会授权范围内履行监管职责。  **第三条** 保险公司应当制定合法、科学、有效的中介业务管理制度，确保经营行为依法合规、业务财务数据真实客观。  **第四条** 保险公司的业务、财务管理信息系统应当真实、准确、完整记载中介业务的业务和财务信息。  　　保险公司应当逐单记载通过保险代理人、保险经纪人签订的保单的保险费和佣金数额。  **第五条** 保险公司应当加强对中介业务的稽核审计，建立中介业务违法行为责任追究机制。  保险公司发现中介业务活动涉嫌违法犯罪行为的，应当按照本办法的规定  进行报告。  **第六条** 保险公司应当按照中国保监会的规定，对保险代理人进行法律法规和职业道德培训，并保留详细的培训档案。  **第七条** 保险公司应当设置专门岗位，负责对保险代理业务进行日常管理，并且建立代理业务合规经营档案。  　　保险公司应当建立代理业务定期核查制度，核查结果应当记入代理业务合规经营档案。  **第八条** 保险公司应当在委托合同中约定，保险公司有权要求保险代理人纠正保险违法行为, 保险代理人拒不纠正的，保险公司有权终止其代理权。  　　保险公司应当及时要求保险代理人纠正保险违法行为，保险代理人拒不纠正的，保险公司应当终止其代理权。  **第九条** 保险公司发现保险代理人存在下列行为的，应当自发现之日起10个工作日内向中国保监会报告：  　　（一）严重侵害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的合法权益；  　　（二）利用保险业务进行非法集资、传销或者洗钱等非法活动；  　　（三）中国保监会规定的其他需要报告的行为。  **第十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不得在账外暗中直接或者间接给予保险中介机构及其工作人员委托合同约定以外的利益。  **第十一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不得唆使、诱导保险代理人、保险经纪人、保险公估机构欺骗投保人、被保险人或者受益人。  **第十二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不得利用保险代理人、保险经纪人或者保险公估机构，通过虚挂应收保险费、虚开税务发票、虚假批改或者注销保单、编造退保等方式套取费用。  **第十三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不得利用保险中介业务，为其他机构或者个人牟取不正当利益。  **第十四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不得通过保险代理人、保险经纪人给予或者承诺给予投保人、被保险人、受益人保险合同约定以外的保险费回扣或者其他利益。  **第十五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不得串通保险代理人、保险经纪人，挪用、截留和侵占保险费。  **第十六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不得串通保险代理人、保险经纪人、保险公估机构，虚构保险合同、故意编造未曾发生的保险事故或者故意夸大已经发生的保险事故的损失程度进行虚假理赔，骗取保险金或者牟取其他不正当利益。  **第十七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不得委托未取得合法资格的机构或者个人从事保险销售活动。  **第十八条** 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在保险业务活动中不得编造虚假中介业务、虚构个人保险代理人资料、虚假列支中介业务费用，或者通过其他方式编制或者提供虚假的中介业务报告、报表、文件、资料。  **第十九条** 保险公司违反本办法第六条至第九条规定的，由中国保监会责令改正，给予警告，对有违法所得的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但最高不得超过3万元，对没有违法所得的处1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中国保监会可以给予警告，处1万元以下的罚款。  **第二十条** 保险公司有本办法第十条至第十七条规定行为之一的，由中国保监会责令改正，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限制保险公司业务范围、责令停止接受新业务或者吊销业务许可证。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中国保监会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任职资格或者从业资格，禁止有关责任人员一定期限直至终身进入保险业。  **第二十一条** 保险公司有本办法第十八条规定行为之一的，由中国保监会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限制其业务范围、责令停止接受新业务或者吊销业务许可证。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由中国保监会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任职资格或者从业资格，禁止有关责任人员一定期限直至终身进入保险业。  **第二十二条** 中国保监会在查处保险公司中介业务违法行为过程中，发现保险代理人、保险经纪人、保险公估机构违法行为的，应当并案查处。  **第二十三条** 中国保监会在查处保险公司中介业务违法行为过程中，发现存在涉嫌非法集资、传销、洗钱、违反国家税收管理规定等应当由其他部门查处的违法行为的，应当依法向有关部门移送。  **第二十四条** 中国保监会在查处保险公司中介业务违法行为过程中，发现国有保险公司工作人员贪污贿赂、挪用公款等违纪、犯罪线索的，应当根据案件的性质，依法及时向监察机关或者司法机关移送。  　　中国保监会在查处保险公司中介业务违法行为过程中，发现非国有保险公司及其工作人员的违法行为，涉嫌构成职务侵占罪、非国家工作人员受贿罪、对非国家工作人员行贿罪、偷税罪等，需要追究刑事责任的，应当依法及时向司法机关移送。  **第二十五条** 本办法自2009年10月1日起施行。 |